

2021년도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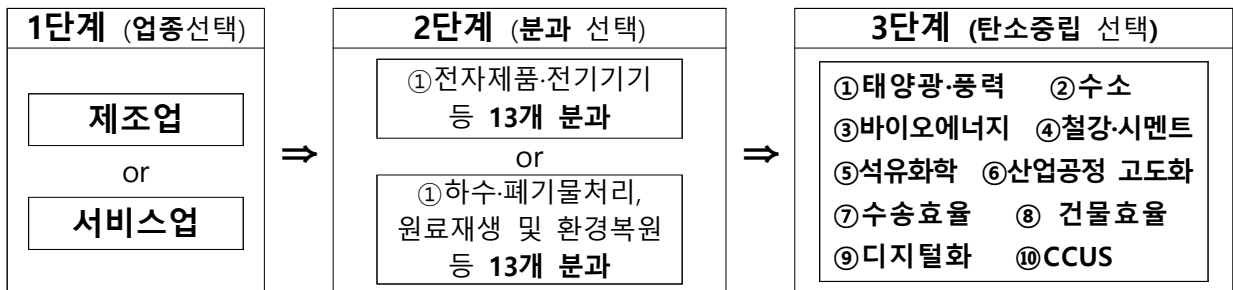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협회장 구 자 균

1. 신청자격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
 -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2. 신청부문

- 신청부문 : 제조업 13개 분과 또는 서비스업 13개 분과
 - 탄소중립분야*(선택) 해당 시 별도 체크
 - *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에 따른 10대 핵심기술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별지 제2-1호 서식 내 [참고] 탄소중립분야 10대 핵심기술 설명 참조)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분과로 신청하여 지정된 우수 기업연구소 중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하여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경우 '탄소중립분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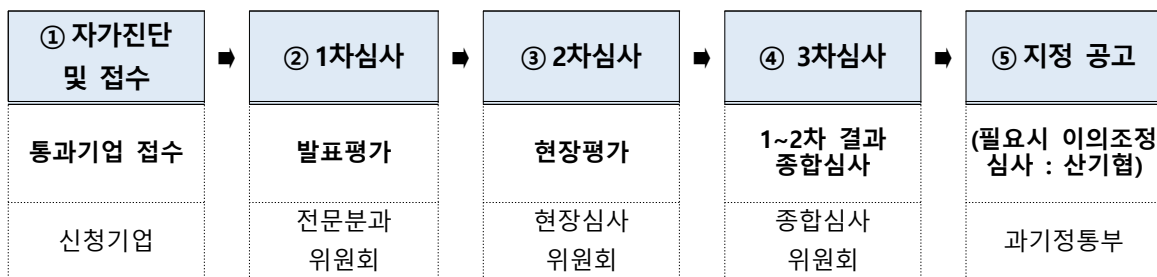
3. 신청제한

- 과거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취소된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 연구부정으로 제재, 사회적 지탄 등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자가진단 및 접수,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

< 심사절차 >



① 자가진단

-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www.toprnd.or.kr - 신청·접수 - 자가진단 및 접수)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자가진단 결과 390점(60%) 이상) 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 별지 제1·2호 서식(탄소중립분야 체크 시 별지 제2-1호 서식 추가 작성)
- 심사기준(650점 만점)

구분	심사기준
기업역량 (135점)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내부/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대외인증 및 수상, 재무적 성과 / 기술 및 시장 경쟁력
연구소(R&D) 역량 (515점)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인적자원,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내부 혁신활동 / 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대외인증 및 수상, 기술(서비스) 경쟁력

②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구소·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등 발표·면접을 통한 정성평가
- 심사기준(300점 만점)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점
연구소·기업역량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	· 기술(서비스)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등	30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등	20
	내부자원 분석능력	· Technology Tree, 기술(서비스) 로드맵 구성 수준 등	20
핵심 보유기술 역량	연구개발인력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등	40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구성 등	30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등	25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등	30
	기술(서비스)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등	35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등	30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의한 시장 경쟁력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등	40
합계			300

-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210점 이상,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

③ 현장심사

○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 발표평가 시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심사기준

평가항목		심사기준
평가 및 판정 사유 요약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내용	1-①.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인력구성 및 수준 관련, 실제와 자가진단평가와 발표심사 내용의 현저한 차이 여부 등 종합적 확인
		1-②.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관련, 실제와 자가진단평가와 발표심사 내용의 현저한 차이 여부 등 종합적 확인
		1-③. 핵심보유기술(서비스) 수준 및 연구개발능력 등 경쟁력 관련, 자가진단평가와 발표심사 내용의 현저한 차이 여부 등 종합적 확인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2-①. 연구소 전체 연구개발인력 수 및 연구개발인력의 최종 학력 등 인적 자원 구성이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불일치 여부 확인
		2-②.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인적자원 구성은 동일하나, 신기술 개발 추진능력,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조직 관리 수준의 현저한 차이 여부 확인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장비 등 연구환경	3-①. 연구소 전체 연구개발장비 구성이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불일치 여부 확인
		3-②.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연구개발 장비 등 구성은 동일하나,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기술표준화 수준, 연구개발 환경 수준의 현저한 차이 여부 확인
	기타	4-①.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기술 경쟁력 및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여부 확인
		4-②. 발표심사에서 요구된 추가 확인 및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심각한 문제점 발견 여부 확인
		4-③. 제출한 서류의 허위 또는 조작 여부 확인

※ 탄소중립분야 기업연구소(신청 시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한 경우)의 경우 현장심사 시 아래 항목에 대한 추가 심사 실시

평가항목		심사기준
평가 및 판정 사유 요약	핵심보유기술의 우수	1-①. 핵심보유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능력
		1-②. 국내외 우수기술과의 비교
	핵심보유기술의 차별성	2-①. 핵심보유기술의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2-②. 새로운 분야의 개척 가능, 응용성
	핵심보유기술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3-①. 핵심기술의 사업추진 타당성 등 고부가가치창출
		3-②. 전체 기술영역의 파급효과
	핵심보유기술의 지식재산권 여부	4-①. 핵심보유기술의 결과로 출원 또는 등록 지식재산권

○ 심사결과 : 현장심사위원회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심사 상정

④ 종합심사

- 심사방법 : 자가진단평가·발표심사 및 현장심사의 절차와 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및 지정 목적의 부합성 등 종합 심사
- 심사기준
 - 지정의 적합성, 지정의 필요성
 - ※ 탄소중립분야 기업연구소(신청 시 탄소중립분야에 체크한 경우)의 경우 별도의 탄소중립분야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보유기술의 우수성, 적합성, 기여도, 사업화 등 심사 예정
- 심사결과 :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이 지정에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기업으로 선정

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 공고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 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확정공고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 6. 8(화) ~ '21. 7. 9(금)
- 신청방법 : 우수기업연구소 홈페이지(www.toprnd.or.kr)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내용 온라인 작성 및 신청서류(아래한글, PDF) 업로드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필수 제출	1.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서식 다운
	2.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홈페이지 서식 다운
	2-1. 탄소중립 기술 설명서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에서 탄소중립분야 체크 시 제출	홈페이지 서식 다운
	3.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제조원가 명세서,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확정 재무제표의 최근 3년
	4.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보험(www.ei.go.kr)→기업서비스에서 출력	최근 3년
	5.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 출력본 - 연구소신고(www.rnd.or.kr)→신고내역보기 출력	최근 3년 (변경신고 기준)
6.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	7. 특허등록원부	최근 3년
	8.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최근 3년
	9.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 * 1. 최근 3년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자료 인정
2. 발표심사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6.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 보유 시 1개 연구소만 신청가능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정 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지정 취소 등) 가능

7.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양미현 과장(02-3460-9026) / 김보미 주임(9020)